# 한국과 일본에서의 도산절차 IT화의 현황과 미래

우상범[[1]](#footnote-1)

# Ⅰ.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IT 또는 ICT)의 발전은 법률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사법절차의 IT화는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IT 강국으로서 사법절차의 IT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기본법률 개정을 통하여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재판절차의 IT화에 관한 입법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시행에는 이르지 못한 데에 비하여, 한국은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이미 10여년간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고 그 개선작업도 준비 중이지만 민사소송법 등 기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각국의 입법 및 실무 현황은 서로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보여준다. 본 발표를 통하여 특히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IT화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고 도산절차 IT화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Ⅱ. 한일 양국의 민사소송절차 및 도산절차 IT화에 관한 입법 현황

## 1. 일본의 경우

가. 2022년 개정

민사소송의 IT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22년 3월 제208회 국회에 제출되어 2022년 5월 18일 국회에서 가결성립되었고, 같은달 25일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① 소 제기 등에 관한 IT화(온라인 신청 등의 허용,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있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에서 온라인 신청 등의 의무화, 시스템 송달 등), ② 기일 등에 관한 IT화(웹 회의 방식[[2]](#footnote-2)에 의한 쟁점정리, 구두변론, 증인심문, 검증 등), ③ 사건기록 등에 관한 IT화(판결서∙조서의 전자화, 사건기록의 전자화, 전자적 소송기록의 온라인 열람, 소송비용의 전자 납부 등), ④ IT를 활용한 새로운 소송절차(법정심리기간소송절차) 및 은닉결정제도(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은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다. 이로써 법률상으로는 재판의 IT화가 실현되었지만, 그 시행은 순차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다.

○ 은닉결정제도: 2023년 2월 20일 시행

○ [1단계] 당사자 쌍방이 웹 회의∙전화회의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화해기일에 참가하는 제도: 2023년 3월 1일 시행

○ [2단계] 당사자가 웹 회의에 의하여 구두변론기일에 참가하는 제도(인사소송의 구두변론은 2단계 시행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시행됨): 2024년 5월 24일까지 시행

○ 웹 회의에 의한 이혼소송 등의 화해∙조정 성립: 2025년 5월 24일까지 시행

○ [3단계] 소장 등의 온라인 제출∙시스템 송달/소송기록의 전자화와 그 열람/법정심리기간심리절차 등: 2026년 5월 24일까지 시행

나. 2023년 개정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재판절차는 각각의 절차가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IT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도산절차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의한 채권신고나 웹 회의에 의한 채권자집회 등은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IT화는 실제로 도산사건이나 가사사건부터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민사재판절차 일반에 IT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21년 6월경부터 가사사건절차, 민사보전, 민사집행, 도산절차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래 2023년 3월 법무성이 ‘민사관계절차 등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등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해 6월 6일 위 법률안은 국회에서 가결성립되었으며, 같은달 14일 공포되었다.

2023년 개정법은 인사소송 및 가정재판소를 관할재판소로 하는 집행관계소송 외에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재판절차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집행, 민사보전, 도산, 비송사건, 민사조정사건, 노동심판사건, 가사사건의 각 절차이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 중 다수(민사집행법, 민사보전법, 도산법 등)는 애초부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포괄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던 만큼, 그 절차의 IT화와 관련하여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의 IT화에 관한 법률이 통용된다. 2023년 개정은 2022년 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각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① 온라인 신청 의무화의 범위(재판소에 의하여 선임된 자 가운데 도산절차의 기관은 의무화 대상이 된 반면, 민사집행에서의 평가인, 강제관리∙담보부동산수익집행의 관리인, 선박집행의 보관인, 가사사건에서의 성년후견인, 보좌인 및 보조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청산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② 제출 서면 등의 전자화 범위(전자화의 예외 문제, 최종적으로는 가사사건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전자화 대상으로 하였다), ③ 기일에서의 웹 회의∙전화회의 허용 범위[심문기일에서 웹 회의와 전화회의 쌍방을 인정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었으나, 중요한 심문절차(민사보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보전이의 등에 관한 심문)나 비송사건 내지 가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입회권을 가지는 심문기일에서 전화회의를 허용할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기일에서도 전화회의를 인정하되 개별사건에서 재판소의 적절한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하였다], ④ 재판소 외 설치 단말기에서의 기록 열람 등의 범위(도산절차에서는 ‘언제든지 열람’의 대상으로서 파산관재인 등 외에도 이미 열람이 인정된 채권자를 추가하였으나, 가사사건 등의 비송사건에서는 ‘언제든지 열람’의 대상을 이미 재판소의 허가가 있었던 기록, 자기가 제출한 서면, 전자재판서만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재판소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등이 주된 논점으로 논의되었다.

2023년 개정법은 원칙적으로는 공포일(2023년 6월 14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따라서 2028년 6월 13일까지 시행되게 된다). 2022년 개정의 3단계가 2026년 5월까지 시행되게 되므로,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2023년 개정의 시행이 완료된다.

## 2. 한국의 경우

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대법원은 2009년 하반기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실현하는 내용의 민소전자문서법 시안을 법무부에 송부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법안을 성안한 후 정부안으로 2010년 3월 24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 3월 24일 제정∙공포되었다.

민소전자문서법 제정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04년경 대법원은 민∙형사를 비롯한 모든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송부하였으나 입법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 민소전자문서법은 위 제정시안의 내용을 기초로 미국 연방법원의 전자파일링 제도와 2005년 개정된 독일 민사소송법(ZPO)의 일부 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한국에서 전자소송 제도의 기본법이 처음 입법화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 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개별 근거 법률[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특허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비송사건절차법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당사자의 전자문서 이용과 전자송달을 일체화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절차진행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전자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사람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종이문서 제출이나 종이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송달간주기간을 1주로 단축시켰으며,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간주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전자서명과 사건기록(재판서, 조서 등 포함)의 원칙적인 전자화 및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부칙 제1항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의 단계적 구현을 상정하여 ‘법을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사건, 도산사건, 비송사건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의해 제정된 ‘민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는 2010년 4월 26일 특허소송, 2011년 5월 2일 민사소송, 2013년 1월 21일 가사 및 행정소송, 2013년 9월 16일 보전처분, 2014년 4월 28일 도산사건, 2015년 3월 23일 민사집행 및 비송사건의 순서로 전자소송의 시행시기를 절차별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이 순차 개통되면서 현재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법원의 모든 절차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있다.[[3]](#footnote-3)

나. 민사소송법 개정

민소전자문서법은 웹 회의 등을 활용한 기일의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전자소송은 유독 원격영상재판 부분(e-courtroom 부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자소송 시행 이후인 2016년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원격영상 신문절차가 도입되었고(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인 2020년 6월경에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변론준비기일에 원격영상재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변론기일에서도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였고, 같은해 8월 17일 공포되어 같은해 11월 18일 시행되었다.

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87조의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 |
|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위 개정법률에 의하면 비공개가 일반적인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공개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변론기일은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검토

한국은 전자소송의 근거 법률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등 기본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기본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특별법의 입법부터 각 절차별로 전자소송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5년(2010년부터 201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조기에 마련하고 이후 5년간 전자소송 시스템 확충에 진력한 한국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이었으나, 민사본안 사건의 약 90%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는 종이소송을 전제로 입법화된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전자소송에 관하여 규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평가가 있다.[[4]](#footnote-4) 10년 이상 활용되어 온 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향후 일본의 전자소송 시스템 개발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은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 2022년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재판절차의 IT화에 관한 근거 법률을 도입하는 등 전자소송에 관하여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여 왔으나,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의 대규모 개정을 통하여 전자소송의 근거를 마련한 점이 고무적이다. 일본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의 법과 체계 등이 유사하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으로서는 법 시행 전까지 실무에서 사용할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로 보인다.

요컨대 2010년을 시작으로 하여 형사소송을 제외한 법원의 모든 절차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을 개발 중인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의 시스템은 잘 마련되어 작동하고 있으나, 전자소송의 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22년 개정 및 2023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소송 제도의 근거 법률을 갓 정비한 일본으로서는 전자소송의 시스템 개발과 구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이 한국과 대비된다.

# Ⅲ. 한일 양국의 도산절차 IT화의 구체적인 현황 - 일본의 2023년 개정법 내용[[5]](#footnote-5)과 한국의 도산전자소송 실무의 비교

## 1. 온라인 신청 등(전자문서의 제출)

가. 일본의 경우

파산법 기타 도산법[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원조법’이라 한다) 및 특별청산에 관한 회사법 규정]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2조의10 규정을 준용하여 모든 재판소에 대하여 인터넷을 사용한 신청 및 제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산절차에서 신청 및 제출의 전면적인 전자화를 도입하였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32조의11도 준용하여,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에 한함)에 관하여는 온라인 신청 등을 의무화하였다(파산법 제13조, 민사재생법 제18조, 회사갱생법 제13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원조법 제15조 등 참조).

게다가 도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절차기관도 온라인 신청 등의 의무화 대상이 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에서 재판소가 선임하는 자에 관하여 의무화가 도입된 유일한 예이다. 이는 파산관재인 등 절차기관은 도산절차에 관하여 폭넓고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므로, 그러한 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신속화∙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한편, 이들은 실무상 대부분 변호사 가운데 선임되기 때문에 온라인 이용의 의무를 부과하여도 문제가 적다고 보이는 점에 기인한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대리, 보전관리인대리, 재생절차에서는 관재인, 보전관리인, 관재인대리, 보전관리인대리, 감독위원, 조사위원, 개인재생위원, 갱생절차에서는 관재인, 보전관리인, 관재인대리, 보전관리인대리, 감독위원, 조사위원, 특별청산절차에서는 감독위원, 조사위원(회사법 제887조의2 제2항 참조, 청산인은 의무화의 대상이 아니다)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들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받겠다는 신고를 할 의무 역시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32조의11 제2항). 한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원조법과 관련하여, 부회심의에서는 승인관재인이나 보전관리인도 의무화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입안 과정에서 파산채권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재판소의 결정을 얻어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이는 대규모 도산사건에서 관재인이 채권신고 시스템을 조성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원활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졌던 과거 사례가 있었던 점에 기초하여 제안된 것이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만일 파산채권자가 재판소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가 현행법과는 달라지게 되므로, 그 법적 지위나 책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는 IT화의 테두리를 넘은 문제이므로, 도산법 개정을 할 때에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져 이번 개정에서는 보류된 것이다. 다만, 현재 실무에서도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재판소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실무운용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실무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채권신고 자체가 온라인화 되었을 경우 위와 같이 관재인이 조성한 시스템이 재판소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 등도 계속하여 실무운용의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의 경우

전자문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뒤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는 전자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한다(민소전자문서법 제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6]](#footnote-6)은 전자소송 의무자가 되고,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역시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9조,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의4호).

다. 검토

도산절차의 절차관계인에 대하여 전자적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의 법제가 동일하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도산절차의 특성과 절차관계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한 법제이다.

변호사인 대리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 공공기관 등에게 전자적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양국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변호사인 대리인에게 전자적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나, 실무상으로는 변호사인 대리인의 경우 대부분 전자적 제출을 하고 있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에 대하여 전자소송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관재인에 대하여 전자적 제출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 승인관재인이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도 전자적 제출의무를 부과하지만, 실무상 외국인인 국제도산관리인은 한국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국제도산사건의 수 역시 적어 국제도산관리인이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잘 발생하지는 않는다. 양국의 실질적인 차이는 한국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뒤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 및 47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 대하여도 전자적 제출의무를 부과하므로 의무자의 범위가 일본에 비하여 넓다는 점이다. 그 밖에 입법론적으로는 도산절차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하여, 전자소송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또는 상장회사 등도 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제출된 서면 내지 재판서 등의 전자화(전자기록화)

가. 일본의 경우

서면신청 기타 재판소에 제출된 서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재판소서기관이 전자화하여 파일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사항을 파일에 기록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에 도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서(이른바 지장문서)에 대하여 열람 등의 제한(파산법 제12조 등)의 규율이 있음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서면에 의한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관하여도 검토되었으나, 그렇게 되면 채권자 등의 기록 열람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민사소송과 비교하여도 예외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도산절차 고유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재판서, 조서, 파산채권자표(파산법 제115조), 배당표(파산법 제191조 제1항) 등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전면 전자화되어 그대로 전자적 사건기록이 되게 되었다.

나. 한국의 경우

회생사건(채무자가 개인인 경우[[7]](#footnote-7) 포함), 파산사건(채무자가 개인인 경우[[8]](#footnote-8) 포함), 개인회생사건은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화를 하여야 한다(민소전자문서예규 제27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 종래 민소전자문서예규는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은 ‘파산선고 다음날’까지, 개인회생사건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다음날’까지 신청인 등이 전자소송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기록화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7년 및 2020년 각각 개정되어 현재는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모두에서 전면적으로 전자기록화를 시행하고 있다.

다. 검토

일본의 경우 도산사건에서 전면적인 전자기록화를 도입하여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 민소전자문서예규 개정을 통하여 전면적인 전자기록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큰 차이가 없다. 전자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시행일까지 전자기록 뷰어 또는 전자적 사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단계이고, 한국은 이미 오랜 기간 활용하고 있는 데다가 조만간 개선된 시스템까지 준비 중이다. 일본은 시스템 개발 시 한국의 전자적 시스템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3. 기일에서의 웹 회의, 전화 회의의 이용 등(원격영상재판 또는 영상기일의 활용)

가. 일본의 경우

기일과 관련하여 구두변론기일 및 심문기일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편리성 향상의 관점에서 민사소송에서의 구두변론기일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규율하였다(민사소송법 제87조의2 및 제187조 제3항, 제4항의 준용). 따라서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구두변론기일을 웹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심문기일을 웹 회의 또는 전화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참고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심문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웹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편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전화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 도산절차 특유의 기일인 채권조사기일 및 채권자집회기일에 관하여는 파산자,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등은 웹회의에 의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파산법 제121조의2, 파산법 제136조의2 등). 이에 따라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조사기일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웹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입안 과정에서는 웹 회의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요건으로서 필수적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둘 것이지, 그러한 경우 누구의 의견을 들을 것인지도 문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필수적 의견청취 절차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이러한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므로 모든 사람의 의견청취는 현실적이지 않고, 그 중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한정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절차의 성질상 웹 회의에 의한 참가를 인정하더라도 통상 관계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없는 점에 따른 것이다.

나. 한국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도산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도산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먼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의 심문기일에 관하여 보면, 채무자회생법은 심문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웹 회의 방식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가 종래 문제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웹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였고, 채무자 공장에 대한 현장검증도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진행한 사례도 있었던 반면, 관계인집회기일 및 채권조사기일을 원격으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년 11월 18일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까지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도산절차에서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를 준용하여 영상기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회생절차와 법인 파산절차에서의 채무자(대표자) 심문기일의 경우 심문기일의 영상재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1항을 준용하여 영상재판으로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회생절차에서의 관계인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 법인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 계산보고집회기일(이하 ‘관계인집회기일 등’이라 한다)을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각 기일은 변론기일과 목적과 특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관계인집회기일 등도 재판상 기일의 일종이고, 영상기일을 실시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이나 절차의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위 각 기일을 영상기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9]](#footnote-9)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변론기일의 영상재판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영상기일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의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영상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사전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영상기일의 신청이 이유 없거나,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 재판부가 영상기일을 실시할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관계인집회기일 등을 영상기일로 진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집회, 개인파산절차에서의 파산선고기일, 채권자집회기일 등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상기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는 있으나, 위 각 기일은 실무상 다수 사건을 동일 시간대에 집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채권자가 실제로 참석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개개의 사건을 선별하여 영상기일로 진행할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인다.

다. 검토 – 재건형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집회기일을 중심으로

1) 채권자집회기일의 영상기일 방식 진행의 중요성

채권자집회기일, 특히 재건형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집회기일을 통하여 채권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가 변경,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도산절차의 기일 중에서도 채권자집회기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로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는 채권자에게도 영상기일을 통하여 원격으로 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 해당 채권자의 권리보호는 물론이고, 권리변경에 찬성하는 채권자들의 채권자집회 참여를 촉진하여 채무자의 회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요 채권자의 사정 등으로 기일을 변경, 속행함에 따른 낭비도 막을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채권자집회기일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에서 이를 영상기일로 진행하기 위한 요건의 차이와 실제로 영상기일을 진행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요건의 차이

먼저 일본의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영상기일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필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일본의 경우보다 영상기일 진행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더 어렵다.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도산절차에 맞는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채권자집회 영상기일 진행의 구체적인 방식

가) 규정의 미비

일본의 2023년 개정법은 채권자집회를 웹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개정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기일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둘 뿐이고, 채권자집회의 영상기일 진행과 관련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일이라는 점에서 주주총회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주주총회의 논의가 양국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집회의 영상기일 방식 운용에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전자주주총회의 논의

(1) 전자주주총회의 개념과 유형

전자주주총회란, 물리적 장소에 주주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주주총회가 이루지는 것이 아닌, 인터넷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공고, 의결권 행사, 의사진행 등의 절차가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개최되는 총회를 의미한다. 전자주주총회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주주총회(이하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또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와 ‘버추얼 주주총회(또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나뉘고,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의 전자적 통신 수단에 의한 참여를 법률상 출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이브리드 참가형 전자주주총회(출석 부정),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주주총회(출석 인정)로 나뉜다(이하 위 각 유형의 분류를 채권자집회기일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각각의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 | --- |
| 유형 | 물리적 장소 | 온라인 중계 | 온라인 실시간 의사진행 | 온라인 실시간 의사결정 |
| ① 현장주주총회 | O | X | X | X |
| ② 현장주주총회중계형 (영상송출) | O | O | X | X |
| ③ 하이브리드 참가형 (출석 부정) | O | O | △(실시간 질문권 행사, 토의 참여 가능) | X |
| ④ 하이브리드 출석형 (출석 인정) | O | O | O | O |
| ⑤ 버추얼 주주총회 | X | O | O | O |

(2) 한일 양국의 도입 현황

일본에서는 회사법 제298조의 소집통지 규정에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물리적 장소로 해석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개최되는 버추얼 주주총회는 불가능하지만, 하이브리형 전자주주총회는 가능하다는 것이 경제산업성의 입장이었다. 특히 회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총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장소와 관련하여 ‘해당 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경우 그 출석 방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주주총회도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하이브리드 참가형은 물론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주주총회까지 개최되어 왔다. 경제산업성은 2020년 2월 회사가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할 때의 법적, 실무적 논점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가이드’를 공표하였고, 이후 일본 정부는 상장회사가 버추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하여 2021년 6월 17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28개 상장회사가 버추얼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에서는 상법 제364조의 소집지 규정의 해석에 따라 하이브리드 참가형 전자주주총회는 상법상 허용되지만,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버추얼 주주총회는 상법상 소집지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고, 상법상 그 개최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출석의제 규정, 의사진행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등)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하이브리드 참가형 전자주주총회만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2년 12월 5일 상법 개정을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23년 8월 2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위 상법 개정안 제364조의2 제1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전자주주총회와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는 물론 버추얼 주주총회까지 개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제364조의2 제2항에서는 출석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채권자집회기일에의 적용

(1) 전자주주총회 유형의 도산절차에서 활용 가부

일본의 경우 2023년 개정법에서는 웹 회의 방식으로 채권자집회에 관여한 채권자 등이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민사재생법 제115조의2 제2항 등), 반드시 현장 기일과 병행하여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5가지 유형의 전자주주총회 진행 방식을 모두 채권자집회기일에 활용하는 데에 적어도 법적인 제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개정 민사소송법의 영상기일 진행에 관한 규정이 채권자집회에도 준용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영상기일을 통한 참석을 변론기일의 출석으로 인정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데다가,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모든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의 진행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버추얼 방식을 포함하여 위 5가지 유형의 전자주주총회 진행 방식을 모두 채권자집회기일에 활용하는 데에 적어도 법적인 제약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개정 민사소송법의 영상기일에 관한 규정을 채권자집회기일에 준용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준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의 영상기일 진행을 위한 요건이 일본에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절차상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활발한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집회기일 진행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 사건에서의 필요에 따라 위 5가지 유형의 전자주주총회 진행 방식 중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활용이 절차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영상기일의 진행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 사건에서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시스템 및 제도의 불비로 인하여 각종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버추얼 방식의 경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신분 확인 방법,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및 그 집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적절한 전자적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는 한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예상할 수 있는 운영상의 쟁점

(가) 버추얼 또는 하이브리드 출석형 채권자집회기일의 개최 요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채권자집회기일 개최에 법적인 제약이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그 상당성을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내부적 기준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버추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상장회사가 경제산업성장관 및 법무성장관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산업성령∙법무성령에서 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0]](#footnote-10) 한편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법 개정안 제364조의2 제4항도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에서 정하였거나 정하게 될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은 채권자집회기일의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예를 들면, 채권자집회기일은 법원의 주도 하에 개최되지만, 주주총회는 공적 기관의 주도 또는 감독 없이 회사가 각자 진행하므로 각 국에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으로 공정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두거나 논의되고 있다)을 제외하고는 전자채권자집회기일의 개최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장회사 등 다수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대규모 회사의 도산절차에서 주주에게 의결권이 있는 경우 등에는 참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채권자집회기일에서의 출석 방식 변경 가부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채권자집회기일에서는 전자 채권자집회에 출석한 채권자 등이 현장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등 출석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결권이 이중으로 행사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출석방식의 변경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의결권이 이중으로 행사된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향후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영상기일의 신청은 개정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73조의3 제5항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집회기일의 일정 기간 전까지 사전 서면 신청을 한 채권자 등에 한하여 전자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러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출석방식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법 개정안 제386조의6 제1항은 ‘회사가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 대리인의 출석 제한

대리인이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지가 문제된다. 채권자 등은 현장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현장 기일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직접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을 전자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게 할 실익이 적은 반면, 법원으로서는 현장 기일과 전자채권자집회기일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은 물론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는 대리인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까지 생긴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경우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 실시가이드’에서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의 출석을 현장 주주총회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의 상법 개정안 제386조의6 제3항도 ‘회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병행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92조 제1항, 민사재생법 제172조 제1항 등), 이러한 법 규정의 개정 없이는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채권자집회기일에서의 대리인 출석을 제한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라) 채권자 등 본인 확인 방법

일본의 경우 회사법은 주주의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 실시가이드’에서 전자투표할 때의 본인 확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법상 현장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자투표에서의 주주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 시행령은 2020년 개정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이외에 이동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등을 통한 인증은 물론 지문인증과 같은 간편한 인증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외에 전자주주총회 실무상으로는 ① 회사가 사전에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주주에게 통지하고 해당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여 주주 본인의 확인을 하는 방법, ② 회사가 주주에게 보낸 QR코드에 의하여 인증을 하는 방법, ③ 주주가 접수 시 해당 화면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과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를 함께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채권자집회기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전자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는 물론 규정 마련이나 시스템 개발 전에도 이러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의결권 행사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채권자집회기일과 버추얼 채권자집회기일에서는 채권자 등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채권자 등이 실시간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클릭 한 번만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의결권자가 자신의 투표내역은 물론 전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한 방법의 전자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기까지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자채권자집회기일에서의 실시간 전자투표는 당장 도입되기는 무리가 있다. 한국의 현행 실무상으로는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재판장이 채권자 등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출석 및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이를 미리 준비해 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채권자집회기일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당분간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하여 전자채권자집회에 출석한 채권자 등에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 통신장애 문제

하이브리드 참가형 전자 채권자집회에 참가한 채권자 등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전자 채권자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 채권자집회기일 또는 버추얼 채권자집회기일에 참가한 주주는 법률상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한 것이므로 통신장애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결의가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3호, 민사재생법 제174조 제2항 제3호 등) 법원의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신장애로 인하여 전자 채권자집회에 참가한 채권자 등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채권자집회기일 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 4. 전자화된 사건기록의 열람 등

가. 일본의 경우

전자화된 사건기록에 관하여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다운로드) 등 청구주체의 범위(이해관계인에 한함) 및 재판소서기관에 대한 청구를 요하는 점(파산법 제11조 등)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파산법 제11조의2 등). 그리고 최고재판소규칙에서, ① 이해관계인은 재판소 외 설치 단말기를 이용하여 열람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 ② 사건 당사자(신청인 및 파산자∙채무자) 및 파산관재인 등(전술한 온라인 신청 의무화 범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자가 대상이 됨)은 언제든지(개개의 청구 없이도) 사건의 계속 중 재판소 외 설치 단말기를 이용한 기록의 열람∙복사(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내용, ③ 채권자로서 일단 열람 등이 허가된 자에게도 동일한 취급이 인정된다는 내용 등을 규율할 예정이다.

나. 한국의 경우

전자기록화된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동의자 및 사용자등록을 한 회생∙파산절차의 절차관계인은 채무자회생법 제28조(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기록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따라서 신청인, 채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열람 등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제출한 문건은 법원 허가 없이 열람 등이 가능하다. 한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내부사용자인 관리위원,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사건기록 전체가 열람 가능하지만, 외부사용자 중 절차관계인에 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법원의 허가 요부와 열람 가능 문서의 범위를 달리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에 따라 법원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  |  |  |  |  |
| --- | --- | --- | --- | --- |
| 분류 | 대상 | 임무시작 ~ 종료 | 열람시기 | 열람대상 및 허가요부 |
| 내부사용자 | 관리위원 | 배당 ~ 업무위임, 사건종료 | 선임 시부터 열람 가능폐지, 종결 등 사건종료의 경우 종료 후 한달까지 열람 가능사건종료 외의 경우(해임 등)은 임무 종료 시 바로 열람 불가 | 사건기록 전체허가 없이 열람 |
| 회생위원 | 선임 ~ 취하, 해임, 사건종료 | 사건기록 전체허가 없이 열람 |
| 외부사용자(절차관계인) | 관리인 | 선임(선임간주) ~ 사임, 해임, 사건종료 | 채권신고서, 명의변경신청서, 이의신청서, 채권신고철회서, 회생계획안, 폐지신청서, 조사확정재판신청서, 조사확정재판취하서 |
| 파산관재인 | 선임 ~ 사임, 해임, 사건종료 | 사건기록 전체허가 없이 열람 |
| 조사위원 | 선임 ~ 해임, 사건종료 | 기록 전체 허가에 의한 열람 |
| 감사 |
| 감사위원 |

다. 검토

일본의 경우 신청인 및 채무자 등 사건 당사자의 경우 개개의 청구 없이도 언제든지 재판소 외 설치 단말기를 통하여 기록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한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자들도 법원에 열람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의무자의 범위와 개개의 청구 없이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관계인의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조사위원의 경우 자유롭게 기록 열람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절차관계인별로 기록 열람의 범위를 다르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면서도 조사위원의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실무를 운용하는데, 신속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도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 5. 전자적 송달∙통지

가. 일본의 경우

전자적 기록의 송달 및 공시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민사소송법 제109조 내지 제109조의4, 제111조)이 포괄적으로 준용되고 있다. 이에 다르면 전자적 기록의 송달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송달해야 할 전자적 기록사항을 출력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전자적 송달을 받는 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받겠다는 신고를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2022년 개정법은 전자적 기록의 송달에 관하여는 출력하여 서면으로 행한다는 종전의 규율을 남기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송달(시스템 송달)을 함께 규정하였다. 송달을 받을 사람이 사전에 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통지 어드레스)를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건관리 시스템에 송달할 전자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통지 어드레스로 그 취지의 통지를 발신하는 형태로 송달하는 방법이다. 송달을 받을 사람이 업로드된 송달할 전자 데이터를 열람 내지 기록(다운로드)한 시점 또는 통지의 발신으로부터 1주간을 경과한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파산절차 등에서의 ‘통지’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한편 파산절차에서의 공고(파산법 제10조) 제도에 관하여는 입안과정에서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 외에도(혹은 관보 게재 없이도) 재판소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파산 등에 관하여 (재판소 내의 게시 등을 넘어서는) 공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러한 쟁점과 관련한 개정은 결국 파산절차에서의 공고의 의의나 효과(파산법 제51조 등 참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도산법 전체의 재검토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졌고, 또한 관보 자체에 대하여도 전자화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가 있는 점도 고려되어, 이번 개정사항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나. 한국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소송 동의자나 사용자등록을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지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 법원사무관 등은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뒤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다).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3항, 제4항,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한편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송달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하는데(민소전자문서법 제12조 제1항 본문), 이러한 경우 e-post 서비스(전자우편을 이용한 맞춤형 편지 제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29조 제4항). e-post 서비스는 재판부가 연계시스템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에 송달 대상 전자문서를 발송하면 우정사업본부가 전송받은 전자문서를 출력∙봉입하여 전자소송 비동의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한 송달 관련 업무가 크게 경감되었다.

다. 검토

한일 양국 모두 전자적 송달의 방법과 송달간주기간은 유사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소송 의무자의 범위가 더 넓은 한국에서 전자적 송달이 활용되는 경우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전자적 송달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e-post 서비스를 활용하여 법원 업무를 경감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한편 일본에서 논의가 되었던 파산절차에서의 공고와 관련하여, 한국의 구 파산법 제105조에서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9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대법원 규칙은 공고의 방법으로 ①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 ②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 실무상으로는 절차비용 경감 및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공고사항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 서비스 중 공고 란에 있는 ‘회생∙파산’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 Ⅳ. 한국 도산전자소송 시스템의 현황

1. 개요

일본의 경우 도산전자소송 시스템을 구현 중이므로 한국의 도산전자소송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한국의 도산전자소송 시스템은 민사전자소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기록뷰어, 전자결재시스템, 명령결정문작성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도산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자표 관리, 전자소송결재 연계, 도산절차별 양식개선, 개인회생 변제업무 성능 개선, 사건중심의 업무처리, 부동산 등기촉탁 연계, e-post 송달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2. 채권자표 관리

도산전자소송에서는 채권자표를 전자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채권자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신고서를 채권조사단계의 기초 데이터로 관리인에게 제공하고, 참여관은 관리인이 제출한 시부인표를 토대로 채권자표를 생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확정시킨다. 확정된 채권자표를 기초로 집행정본 등 제증명 발급도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채권자들은 언제든지 채권자표의 전자적 열람이 가능하다.

3. 사건 중심의 업무처리

일반적인 소송절차와는 달리 도산절차는 법률로 정해진 연속적인 일련의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도산전자소송 시스템은 워크플로우(workflow) 개념을 전제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단계별로 생성이 필요한 문건을 분류하여 문건생성시스템(명령결정문작성관리시스템)에 연동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사건중심업무처리 UI를 판사용과 실무자용으로 구분하여 구현함으로써 업무 흐름 순으로 사건관리와 결정문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구현은 도산업무 경험이 부족한 법관, 실무자 등이 업무의 순서와 맥락을 이해하고 절차를 익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4. 전자적인 부동산등기촉탁

한국 법원은 1998년 이미 부동산 등기시스템의 전산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도산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기존 부동산 등기촉탁 연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자적인 부동산등기촉탁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도산절차와 관련한 18개 유형의 등기에 대하여 등기 목적별로 전체 29종의 촉탁서를 신규로 구현하였고, 촉탁처리 전에 미리보기를 통해 촉탁서, 결정문 정본 등을 전자문서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촉탁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5. 개인회생 변제예정액표 자동생성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제예정액표를 자동생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채무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변제예정액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가용소득 등을 통한 변제내역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절차의 신속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6. 전자소송기록뷰어 개선

기존 민사소송에서의 전자기록뷰어를 기반으로 도산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뷰어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전자기록뷰어의 좌측 날개에는 기록목록을, 우측 날개에는 증거목록을 보여주고, 가운데에는 선택된 목록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좌측 날개 기록 부분에 관리인의 허가신청문건 탭과 채권신고 탭을 추가하여 대량 문서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구현하였다.

7. 소통기능의 강화

주요문건 접수 시 알리미를 통하여 실무관에게 알림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현하였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신청서, 허가서에 대한 전자결재 시 재판부의 검토의견을 제출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알리미를 통해 외부회생위원과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 Ⅴ. 도산절차 IT화의 미래 – AI와 빅데이터의 활용

1. 개요

민사소송 내지 형사소송 등 사법절차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도산절차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은 찾기는 어렵다. 한편 인공지능은 학습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제이다. 그 뿐만 아니라 소송과 관련하여 대량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된다면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촉진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송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인공지능과 별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산법제는 채무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거스르는 영역이므로 끊임없이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 경제의 갱생이라는 정책적 효과 달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고 정책적 목적이 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의 필요성이 크고, 그 토대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산사건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를 정책 결정 내지 법원 도산절차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수집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하게 하여 채무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산절차의 선택, 적절한 변제계획안의 작성, 자산 유형별 효과적인 환가 계획의 수립 및 실행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경우

도산절차에 AI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하려는 구체적인 논의는 찾기가 어려우나, 최근 민사판결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어 주목된다. 2020년 3월경 민사사법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관계 부성청 연결회의의 제언 ‘민사사법제도의 추진에 관하여’에서 공공재로서의 민사판결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하였고, 이에 따라 일변련법무연구재단에서 ‘민사판결의 오픈데이터화 검토 프로젝트팀’이 설치되어 검토가 진행되었다. 주로 AI에 의한 비실명화 처리의 실증실험이 이루어졌고, 오픈데이터화를 도입하는 데에 따르는 이론적∙제도적 문제점이 정리되었다. 2022년 10월부터는 법무성에 ‘민사판결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검토회’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13회(2023년 12월 22일 개최되었다)의 회의를 통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2025년에 실시되는 민사소송 IT화의 3단계(전자판결서 제도의 실시 등)와 동시에 오픈데이터화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도산사건과 관련하여, 연도별, 종류별로 제기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 그리고 전국의 사건종류별 처리결과건수를 제공하는 통계 외에 도산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통계연감 중에 기업도산에 관하여 기본적인 각 도산기업의 자산·부채 현황이나 도산의 주된 원인 및 업종분류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둔 것이 있다.[[11]](#footnote-11)

3. 한국의 경우

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12]](#footnote-12)

(1) 개요

한국 법원의 사법 업무시스템은 종이 기반 절차를 그대로 전자화한 것으로서, 대법원 홈페이지가 구축된 1998년 이후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부분적∙단계적 확장을 통하여 복잡도가 심화된 상태이고, 이로 인해 내부 및 외부의 개선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사법업무 시스템은 전체 118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이 일부 중복되기도 하고, C/S(client/server) 플랫폼, 웹(Web) 기반 플랫폼, 앱(App) 기반 플랫폼이 혼용되어 있어 시스템마다 솔루션 제공 방식이 상이하며, 시스템 상호간연결 방식도 복잡하여 새로운 ICT 기술의 수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13]](#footnote-13) 이에 종이 소송에서 탈피한 최신의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자자료 제출 시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파일 용량을 10MB(멀티미디어 파일의 경우 50MB)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전산장애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부는 2015년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를 통하여 전자소송시스템 개선의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2016년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고, 2017년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소송의 미래시스템을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2020년 9월 28일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14]](#footnote-14) 이에 따른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은 4년의 기간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개선사항은 외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과 내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외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구축하여 사법정보 제공 채널을 통합하고,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결문, 법령, 규칙/예규/선례 등 법령정보 뿐만 아니라 사법통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 등도 제공하는 한편 키워드 중심의 검색에서 자연어 검색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한다.

② 사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챗봇을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당사자가 챗봇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그 답변을 바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친화적 지능형 절차안내를 도입하려고 한다.

③ 사법정보 공유센터를 통하여 행정기관, 법원, 국세청, 이동통신사 등 방문 없이도 관련 서류를 단번에 제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④ 단순 조회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 앱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수준으로 모바일 전자소송을 확대한다.

⑤ 대국민 소송 관련 단일 창구 역할을 하는 ‘사법통합 민원포털’을 구축하여 현재 인터넷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기록열람, 전자공탁, 전자민원센터 등 개별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사법 포털들을 통합하고, 구체적 소송 진행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며, 소송 진행시 예측 가능한 절차 및 단계별 소송상태를 공유하여 외부이용자에게 향후 작업 내용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⑥ 그 밖에 주소보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송달료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제증명 인터넷 발급을 확대한다.

내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록뷰어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록뷰어에서 분할화면 기능을 강화하여 여러 개의 서면을 한 화면에서 대조하며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서증 썸네일을 제공하여 클릭하지 않고도 썸네일을 통해 서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 ‘사법통합 민원포털’을 통하여 ‘쟁점 요약∙대조 준비서면’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재판부가 소장과 답변서를 통하여 파악한 쟁점들을 등록하면, 원∙피고는 각 쟁점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작성하게 한다. 기록 뷰어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쟁점 요약∙대조 준비서면’을 표 형식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중 그 전에 제출된 서면에 기재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부분에 음영 표시를 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② 정보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산재된 법률 정보와 지식 채널을 통합하여 단일한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단번에 모을 수 있는 통합검색을 제공한다. 단순한 UI 개선에 그치지 않고 최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자연어 검색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 질의 의도와 검색 목적에 기반한 지능형 통합검색을 구현한다. 한발 더 나아가 내부이용자가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주장서면 정보를 확인하여 그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 목록을 유사도에 기반하여 검색결과로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OCR(optical character reader) 처리를 통해 텍스트 PDF 파일로 전환하는 종이서면의 범위를 대폭 강화하여 키워드 기록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이와 같은 OCR 처리의 확대 및 전자소송 제기 시 ‘빈 칸 채우기’ 방식의 e-form 적극 활용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③ 문서 작성 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사건유형에 활용되는 ‘통합 문서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일한 문건이라면 그 소송이 어떤 유형이든 관계없이 단일한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일적 서식분류체계에 따라 유사도가 높은 서식들은 단일 서식으로 통합되고 낡은 양식들은 폐지되게 하며, 업무부서에 작성 툴을 제공하여 직접 양식 수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정된 서식을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다.

④ 오류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업무절차별 조치의 누락을 모니터링하여 코트넷 메일, 알리미 메신저, SMS 등을 통해 해당 재판부의 참여관, 실무관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소송서류 접수 시 흠결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당사자가 e-form형태로 제출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흠결 사항이 발견되면 보정명령문을 자동 생성하고 재판장에게 결재요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워크플로우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파산, 전자독촉, 소액사건의 이행권고 절차 등에서 사건의 업무 흐름을 도식화한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개별 메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워크플로우에 따라 자동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⑤ 업무처리 절차의 자동화와 이중 결재의 최소화를 통하여 수작업과 중복작업을 최대한 감축한다. 송달료 납부나 송달 방식 구분, 접수문건 분류, 재배당 및 이송, 기일변경명령,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이 그러한 영역이다.

(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에 따른 도산 부분의 변화

(가) 메뉴 구성의 변화

① 현행 ‘회생파산’ 단일 메뉴구조를 ‘회생’, ‘파산’, ‘개인회생’ 메뉴로 세분화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분리하고, 회생파산 메뉴구조도에 있던 각 절차의 진행단계를 차세대 매뉴구조도로 표시할 예정이다. ② 현행 진행구분, 종류별로 이분화되어 있던 문서작성의 구조를 진행단계는 메뉴구조도에 표현하고, 종류별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나) 개인회생 소명자료 구조화

개인회생 사건의 자료제출목록의 편년체적 자료편철 방식을 탈피하여 항목별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로써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제출시기와 상관없이 [기록뷰어] 화면에서 항목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기록뷰어의 [소명자료분류] 팝업 화면에서 항목별로 문서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 개인회생 변제 방식의 변경

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 미수행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사법공유센터와 은행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② 오입금된 변제금의 환급절차에 계좌이체를 추가하고, 판사의 승인절차로 일원화하는 등 오입급 변제금의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③ 지급제한관리 화면을 신설하고, 변제금 이체시 압류된 변제금이 출급되지 않도록 변제금 압류내역 관리를 체계화한다.

(라) 제증명발급 절차 개선

① 변제수행납입증명원의 인터넷 발급을 시행한다. ② 현행 [승계인 정보관리] 화면을 각종절차지원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승계집행문 발급절차를 일반화하고, 승계집행문 발급을 위한 승계인 정보관리 기능을 개선한다.

(마) 법인등기의 전자적 촉탁

전자적 촉탁을 위하여 법인등기촉탁서 생성 화면을 신설하고, 사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등기정보를 전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바) 기타

① 회생위원 개인회생자료 제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필수 소명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 후 자동으로 보정권고를 생성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② 개인파산관재인 선임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다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나. 도산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1) 도산사건 데이터베이스 현황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는 도산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사법연감 및 사법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즉 각 도산사건의 처리 현황 및 결과, 처리기간 등이 집계되고 있고, 그 외의 도산사건에 관한 전국 단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방식(e-form)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사건에 한하여 관련 정보들이 계속하여 정형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개인파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어떤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인지 논의하여 정하였고,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도 이후의 통계를 산출하였다.[[15]](#footnote-15)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하여서도, 2019년 ‘(개인회생) 통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2020년도 이후의 통계조사 결과를 산출하였다.[[16]](#footnote-16)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경부터는 위와 같이 통계조사를 하여 작성한 전년도 또는 직전 반기의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사건의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17]](#footnote-17)

그 외에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기업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산절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2019년에 시범적으로 5개년 법인회생 사건(2014년 4월 28일부터 2019년 5월 8일따지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사건 1,921건을 대상으로 한다)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8]](#footnote-18) 위 작업에서는 법인회생사건의 사건번호, 채무자명, 업종명 등 총 35개 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 실증연구 결과 발표 후 법인회생 사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았으나, 회생기업의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도산절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접수되는 사건부터 위 2019년 작업에서 수집한 항목보다 수집 대상 데이터 항목을 확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2) 도산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2020년 10월경 시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산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하여 신청건수, 처리기간 등 단순 통계 외에도 산업별, 업종별, 규모별, 채무액수별, 채권종류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김도읍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행정처에서는 2021년경 ‘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같은해 12월경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도산절차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과 수집의 원칙 및 방법, 각 절차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방안, 입법론적 의견을 담은 연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특히 위 보고서는 각 절차별로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기본 신상, 주거 형태, 가족, 이혼, 상속, 직업, 학력, 재산, 채무, 수입, 지출, 회사현황,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 M&A, 파탄 이유, 면책 불허가 사유, 도산절차 진행, 배당절차, 기각 사유 관련 정보들 가운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수집해야 할 데이터 항목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후 2022년 8월경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로 도산사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위 법률안 또는 그 수정안이 통과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Ⅵ. 결론

급격한 IT 기술의 발전은 도산절차에도 큰 혁신을 가져다 준다. 그 혁신은 도산절차의 신속화∙효율화에 기여하고, 채무자의 갱생 및 국가경제의 회복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도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의 도산절차 IT화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① 단기적으로는 개인도산절차의 신청인이 신청서의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부채증명서 등)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기관, 과세관청, 은행, 이동통신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사소송 시스템 내에서 위와 같은 자료들을 한 번에 발급받아 그대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② 중기적으로는 전자투표가 가능한 버추얼 채권자집회의 실무상 도입, ③ 장기적으로는 도산사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AI의 활용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으로서는 기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를 없애는 일이 급선무로 보이고, 일본으로서는 완성도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의 2022년 개정법과 2023년 개정법의 내용을, 일본은 한국의 현행 전자소송 시스템의 장단점 및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위 각 논점의 추가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1. 서울회생법원 판사 [↑](#footnote-ref-1)
2.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서로 인식하면서 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 [↑](#footnote-ref-2)
3.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한국에서도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전자소송을 도입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1조 본문).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부칙 제1조 단서) 형사 전자소송시스템의 개통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ootnote-ref-3)
4. 전휴재,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2022) [↑](#footnote-ref-4)
5. 山本和彦、民亊裁判手続きのIT化、 弘文堂（2023）을 주로 참고하였다. [↑](#footnote-ref-5)
6. 도산사건에서는 조세채권 등을 가진 채권자로서 주로 등장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민소전자문서예규’라 한다) [별표 2]는 전자소송 의무를 부담하는 47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footnote-ref-6)
7. 통상 ‘일반회생’이라 부른다. [↑](#footnote-ref-7)
8. 통상 ‘개인파산’이라 부른다. [↑](#footnote-ref-8)
9. 전범식, “도산절차 영상재판의 실시 및 확대 방안”, 심화연구총서Ⅰ 도산실무 이노베이션 2022, 사법연수원(2023), 7-17. [↑](#footnote-ref-9)
10. 경제산업성령∙법무성령 제1조 각 호에서는 통신방법사무에 관한 책임자의 확보, 통신장애에 관한 방침의 설정, 통신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출석이 어려운 주주의 이익확보에 관한 사항, 주주명부상 주주의 수가 100명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footnote-ref-10)
11. 법원행정처, 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22-02, 119-120면. [↑](#footnote-ref-11)
1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도입되는 ‘지능형 통합검색’, ‘지능형 소송절차 안내’ 등은 선례검색 개선 및 데이터 시각화, 사법접근권의 향상과 관련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이다. [↑](#footnote-ref-12)
13. 전휴재, 위의 글, 121면. [↑](#footnote-ref-13)
14. 유아람, “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2021), 64면. [↑](#footnote-ref-14)
15. 개인파산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파탄시기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 파탄원인, 채무총액,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 연령대, 미성년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 주거형태, 월수입, 재산 등 항목의 통계 분석 결과를 조사하고 있다. [↑](#footnote-ref-15)
16.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채무 총액, 연령대, 부양가족 수, 배우자 유무, 생계비, 월수입, 재산(청산가치, 부동산 소유 상황, 임대차보증금 보유 상황), 변제율,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이 적용된 사건의 수와 사유, 영업소득자 비율 등 항목의 통계 분석 결과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파산사건과 관련한 통계 조사의 항목이 다소 많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파산관재인 보고서 작성 방식이 e-form화 되어 있어 각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축적되어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footnote-ref-16)
17. 자세한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의 사건통계 안내(<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statistics/index.jsp>)를 참조할 것. [↑](#footnote-ref-17)
18. 김희동 판사가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사건 데이터입력 작업성과 및 분석결과’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그 결과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의 사건통계 안내(<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statistics/index.jsp>)에 개인도산사건 통계분석 결과보고서와 함께 게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연도별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개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조기종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도입한 2017년부터 인가전 M&A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 현상이 관찰되었고, 업종별 분석결과 건설업의 조사폐지율이 가장 높고 인가율이 가장 낮아 회생에 성공하기 가장 어려운 업종이라는 점, 의류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footnote-ref-18)